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98
----------	-------

발의연월일 : 2026. 1. 13.

발 의 자 : 이재정 · 이학영 · 박홍배
강선우 · 임호선 · 한준호
김한규 · 김준형 · 서미화
김 윤 · 문정복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교도관 대상 폭행 · 폭언 · 모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일부 시설에서는 교도관이 수용자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교도관이 직무수행 중 공격을 받아 골절 · 타박상 등 상해를 입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교정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교정시설 운영 및 교도관의 직무를 규율하고 있으나, 교도관에 대한 직무수행 방해나 폭행 · 폭언 ·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충분치 않은 실정임. 또한 교도관이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민 · 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국가 차원의 법

를지원 근거가 미비해 교정공무원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교정공무원이 법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며,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와 공공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현장에서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교정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용자의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및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교정시설의 질서와 교도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교도관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이 필요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직무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 제103조의2 및 제13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교도관의 직무수행 방해 금지 등) 수용자는 이 법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직무수행 중인 교도관을 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의2(소송지원)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은 교도관(「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교도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도관의 직무
2. 제93조, 제94조,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3조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
3. 기타 다른 법령에서 교도관의 직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제133조의2(직무수행 방해 등) ①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2조의2를 위반하여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직무수행 중인 교

도관을 모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교도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2조의2(교도관의 직무수행 방해 금지 등) 수용자는 이 법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직무수행 중인 교도관을 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신 설></u>	<u>제103조의2(소송지원)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은 교도관(「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교도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1. 제10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도관의 직무</u> <u>2. 제93조, 제94조,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3조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u> <u>3. 기타 다른 법령에서 교도관</u>

<u><신 설></u>	<u>의 직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u> <u>제133조의2(직무수행 방해 등) ①</u> <u>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u> <u>92조의2를 위반하여 교도관의</u> <u>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직무수</u> <u>행 중인 교도관을 모욕한 경우</u>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u> <u>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② 제1항의 죄를 지어 교도관</u> <u>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u> <u>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u> <u>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u> <u>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u> <u>한다.</u>
---------------------------	---